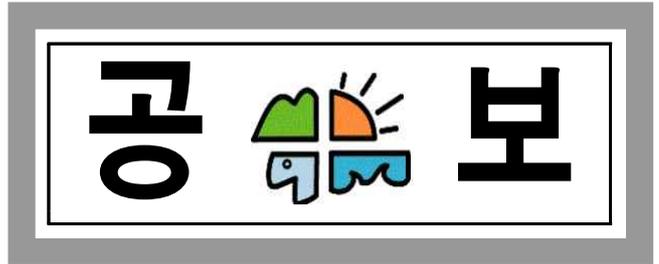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508호 2023년 12월 22일(금)

조 례

-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
-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4
-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5
-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 .. 9
-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
-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11
- 속초시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 12
- 속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13
- 속초시 시민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 17

고 시

-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19
- 속초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속초박물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24
- 속초 도시관리계획(대포항 개발사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 26

공 고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 27
- 보상계획공고 28
-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 32
-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하는 도로 지정 공고 33

입법예고

-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35

발행 : 시 민 소 통 담 당 관 (전화 : 639-3750, FAX : 639-2799)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2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557호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속초시 상징물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2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규칙 제1558호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입법예고)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시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2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65호

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 규정에 따라 속초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치법규”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
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3. “입법예고”란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등을 미리 알려 의견을 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의 등) 입법안의 내용이 개별 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에서 관계 기관과

의 사전협의 및 사전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협의나 승인을 받은 후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입법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입법안의 취지 또는 주요 내용 등이 변경되어 다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변경·추가되는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 ① 시장은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입법예고문을 시 공보와 시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
2. 입법안의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
3. 입법안 전문(신·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

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입법예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입법예고를 할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을 통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시의 중요정책이나 시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인터넷이나 신문 등의 매체에 이를 예고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 ① 입법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입법을 긴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유로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줄이려고 하는 경우 입법업무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입법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검토·결정하고, 처리결과 등을 지체 없이 의견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 ① 시장은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하여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입법안인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공청회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2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66호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2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67호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본문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3호 중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를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거주한 65세 이상인”을 “거주하고 있는”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국가보훈처장”을 “국가보훈부장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2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68호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

속초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2023년 12월 31일까지”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2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69호

속초시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

속초시 수산물공동할복장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2일

속 초 시 장



속초시 조례 제3070호

속초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의 시설을 말한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4. “소규모 상가”란 일반건축물대장상의 주용도가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이며 연면적 330㎡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
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및 대상
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등)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 그 밖에 시장이 침수 방지지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지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지원기준)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지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 원 이하
2. 공동주택: 5백만 원 이하

제9조(설치규격) 침수 방지지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절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 편성 등) 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지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운영) 시장은 침수 방지지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수자원 분야 또는 자연재해 전문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침수 방지지설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시민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22일

속 초 시 장 인

속초시 조례 제3071호

속초시 시민 영양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속초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영양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균형있는 식생활을 통한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② 시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속초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
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
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규모 및 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영유아, 임산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 또는 성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
2. 지역사회에 특화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
3.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 및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해야 한다.

제7조(영양·식생활 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변경) 고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속 초 시 장

1. 실시계획 개요

가. 사업명: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

나. 사업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청학동 642-5번지 일원

다. 사업규모

- 토 공: 흙막이 $V=5,867\text{m}^3$, 사토 $V=5,151\text{m}^3$, 사면녹화 $A=765\text{m}^2$
- 배수공: L형옹벽측구 및 배수로 설치 등 $L=224\text{m}$
- 구조물공: 자중식옹벽 $L=115\text{m}(H=1.5\sim 4.5\text{m})$
- 포장공: 아스팔트포장 $A=1,481\text{m}^2$
- 부대공: 안전난간 등 1식

라. 사업비: 2,952백만원

마. 사업기간

- 당초: 2020. 10. ~ 2023. 12.
- **변경: 2020. 10. ~ 2025. 12.**

바. 사업시행자: 속초시장(속초시 중앙로 183, 재난대응과)

2. 설계도서(설계예산서 포함): 속초시청 재난대응과 비치 및 열람 가능

3.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및 연계성 검토결과: 다른 사업과 중복성 및 연계성 없음

4. 사업효과 분석

-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를 통한 재해위험 해소를 대규모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

5.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계획

가. 정비사업 완료 후 관계 전문가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위험도 재평가를 통한 재해위험도 등급 조정과 필요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붕괴위험지역 지정 해제

나. 해당 시설물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라 연 2회 이상 안전점검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유지관리 실시

6. 기타사항

- 청학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청 재난대응과 방재복구팀(☎ 033-639-240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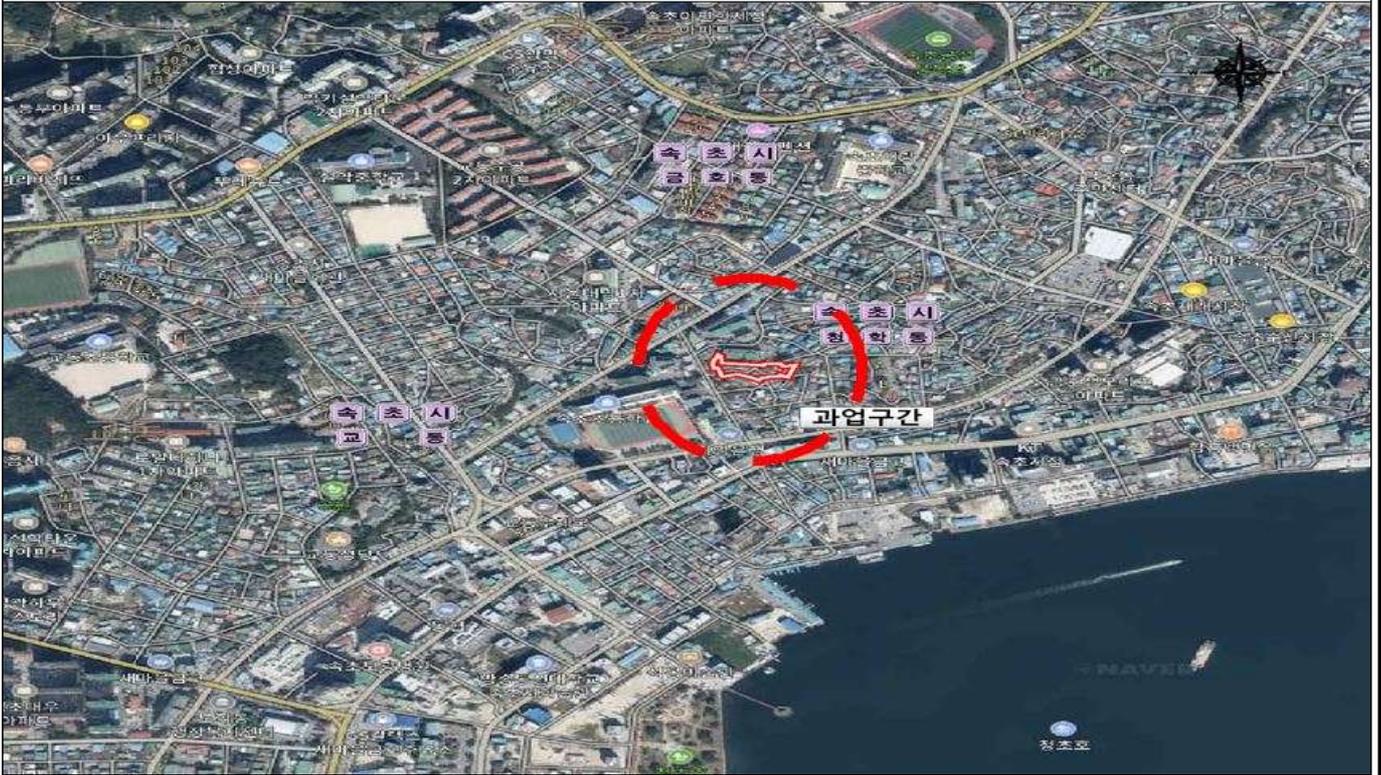
붙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부.

2. 편입토지조서 각 1부. 끝.

<붙임1>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현 장 사 진



<붙임2>

편입토지조서(당초)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주소	성명	
합계		16필지		4,866	2,930			
1	속초시 청학동	642-60	대	170	170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리	박*선	
2	속초시 청학동	642-61	대	176	176	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642-6	정*화	
3	속초시 청학동	642-62	대	163	163	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642-62	이*삼	
4	속초시 청학동	642-68	대	144	144		속초시	
5	속초시 청학동	642-63	대	134	134	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642-63	이*수	
6	속초시 청학동	642-70	대	92	92	강원도 속초시 만천4길 28	신*현	
7	속초시 청학동	642-72	대	128	128	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486-7	조*길	
8	속초시 청학동	642-74	대	124	124	산179	박*원	
9	속초시 청학동	642-73	대	106	106	충청북도 충주시 연수동산로 12, 101동 1402호	김*식	
10	속초시 청학동	634-54	대	96	96	강원도 속초시 청학동 634-54	김*석	
11	속초시 청학동	634-28	대	188	188	강원도 속초시 선사로4길 32-1	김*광	
12	속초시 청학동	634-6	전	598	212		속초시	
13	속초시 청학동	642-5	대	2,225	675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48-57	주식회사 대명건설	
14	속초시 청학동	642-57	대	140	140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999 원앙마을 412-202	장*호	
15	속초시 청학동	642-69	대	254	254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999 원앙마을 412-202	장*호	
16	속초시 청학동	642-71	대	128	128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999 원앙마을 412-202	장*호	

<붙임3>

편입토지조서(변경)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비고
				지적	편입	주소	성명	
합계		13필지		4,357	2,421			
1	속초시 청학동	642-68	대	144	144		속초시	
2	속초시 청학동	642-63	대	134	134		속초시	
3	속초시 청학동	642-70	대	92	92		속초시	
4	속초시 청학동	642-72	대	128	128		속초시	
5	속초시 청학동	642-74	대	124	124		속초시	
6	속초시 청학동	642-73	대	106	106		속초시	
7	속초시 청학동	634-54	대	96	96		속초시	
8	속초시 청학동	634-28	대	188	188		속초시	
9	속초시 청학동	634-6	전	598	212		속초시	
10	속초시 청학동	642-5	대	2,225	675	강원도 속초시 영랑동 148-57	주식회사 대명건설	
11	속초시 청학동	642-57	대	140	140		속초시	
12	속초시 청학동	642-69	대	254	254		속초시	
13	속초시 청학동	642-71	대	128	128		속초시	

속초시 고시 제2023-167호

속초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속초박물관)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1. 속초 도시관리계획(문화시설: 속초박물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미래전략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2월 21일

속 초 시 장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아래조서 참조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도: 실음생략

1.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가. 공공·문화체육시설

1) 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속초박물관	박물관	속초시 노학동 736-1번지 일원	154,321	감)6,700	147,621	2004.10.22. (강원도 고시 제 2004-72호)	

2) 문화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 설 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속초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시설 구역 변경 - 면적: 154,321㎡ → 147,621㎡ [감) 6,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시령로와 연결한 문화시설 부지 내 노학동 산158-4번지 일부 제설창고 신축을 위하여 문화시설을 부분 해제하고자 함.

속초 도시관리계획(대포항 개발사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의 승인 고시

1. 속초 도시관리계획(대포항 개발사업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결정(변경)하고, 같은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속초시청 미래전략과에 비치하여 토지 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23년 12월 21일

속 초 시 장

가.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조서: 붙임 참조

나. 속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지형도면: 실음생략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속 초 시 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속초시청(문화체육과)		
	대표자 (성명)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소하천명		중도문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도문동 1400-2		
	면적	298㎡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3. 12. 15.~영구		
	목적 및 사유	도로 포장(도시계획도로 소로1-12호선 일원)		

보 상 계 획 공 고

속초시에서 시행하는 「도시계획도로(중로3-35호선) 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 보상법”이라 함)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보상계획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시면 이의신청서를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19 일

속 초 시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도시계획도로(중로3-35호선) 개설공사

나. 사업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사업

다. 사업위치 :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191-5번지 일원

라. 사 업 량 : 도로개설(L=514.0m, B=12.0m)

마. 사업기간 : 2020. 6. 26. ~ 2026. 12. 31.

바. 사업시행자 : 속초시장

2. 보상대상

가. 토지 : 강원도 속초시 청호동 일원(편입토지내역 : 별도기재)

나. 물건 :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위 토지상 지장물

※ 세부내역은 아래 열람장소에 비치된 토지 및 물건조서 내용 참조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 12. 12. ~ 12. 26.

나. 열람 및 이의 신청장소 : 속초시청 건설도시과(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다. 열람내용 :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역

라. 열람 및 이의신청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 및 물건의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은 후 열람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장소 등에 비치 및 게시된 이의신청서에 이의내용을 기재하여 열람기간 만료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열람기간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보상계획

가. 보상절차

- 보상계획 공고 ⇒ 조서열람 및 이의신청 ⇒ 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이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및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관한 사항

- 토지보상법 제6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 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속초시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 소유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속초시에 감정평가를 추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1명에 대해서만 동의할 수 있습니다.

다.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3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68조제2항과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강원도)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 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강원도)와 토지소유

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라. 보상의 시기 :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

마. 보상의 방법 : 소유권 이전 등기 후 현금 지급(계좌 입금)

※ 근저당, 가압류 등과 같은 권리가 설정되어 있는 경우는 사전 말소 후 협의 보상 가능

5. 기타사항

가.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에 위반한 사항이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대상을 확정하여 손실보상 할 예정이며 조사거부, 장기부채 등으로 인한 미조사 물건에 대하여는 공부(건축물관리대장 또는 향측면적 등)를 기준으로 공고하였으며, 열람 기간 중 조사요청이 있을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요청 또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내용대로 보상합니다.

다.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미등기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주소나 거소불명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라. 토지 등 소유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연락처가 기재된 주민등록등본을 속초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보상대상 토지 중 보상계획공고 이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분할측량 결과 등으로 인한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편입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보상계획공고 당시 발급된 공부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현재와 다를 수 있으니 실제와 다를 경우 속초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사업구간에 편입되고 남는 토지(잔여지)가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잔여지 매수여부 판단을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 및 용도지역, 공익사업 편입토지의 면적 및 잔여지의 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아. 개인별 보상액,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체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의 시기에 개별적으로 상세히 통지할 예정입니다.

※ 도시계획도로(중로3-35호선) 개설공사 편입토지(물건) 내역

구분	소재지	편입지번
토지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191-5, 1176-3, 1177-1, 1178, 1196-3, 1179, 1177-2, 1181-7, 1181-6, 1181-1, 1180, 1087-4, 1196-5, 1182, 1183, 산90-1
물건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위 토지에 소재한 지장물과 권리 등 일체

속초시 공고 제2023-1214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허가 고시(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속 초 시 장

점용자	상호 및 명칭			
	대표자 (성 명)	서동0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장천마을1길 1-00
소하천명		장천천		
점용 개요	위치	속초시 장사동 304-2, 304-73, 116-15		
	면적	74㎡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2024. 1. 1.~2028. 12. 31.		
	목적 및 사유	주택 진출입로		

건축허가(신고) 시 기 지정한 도로 폐지 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나목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신고) 시 그 위치를 지정했던 도로에 대하여 「건축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로 폐지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2일

속 초 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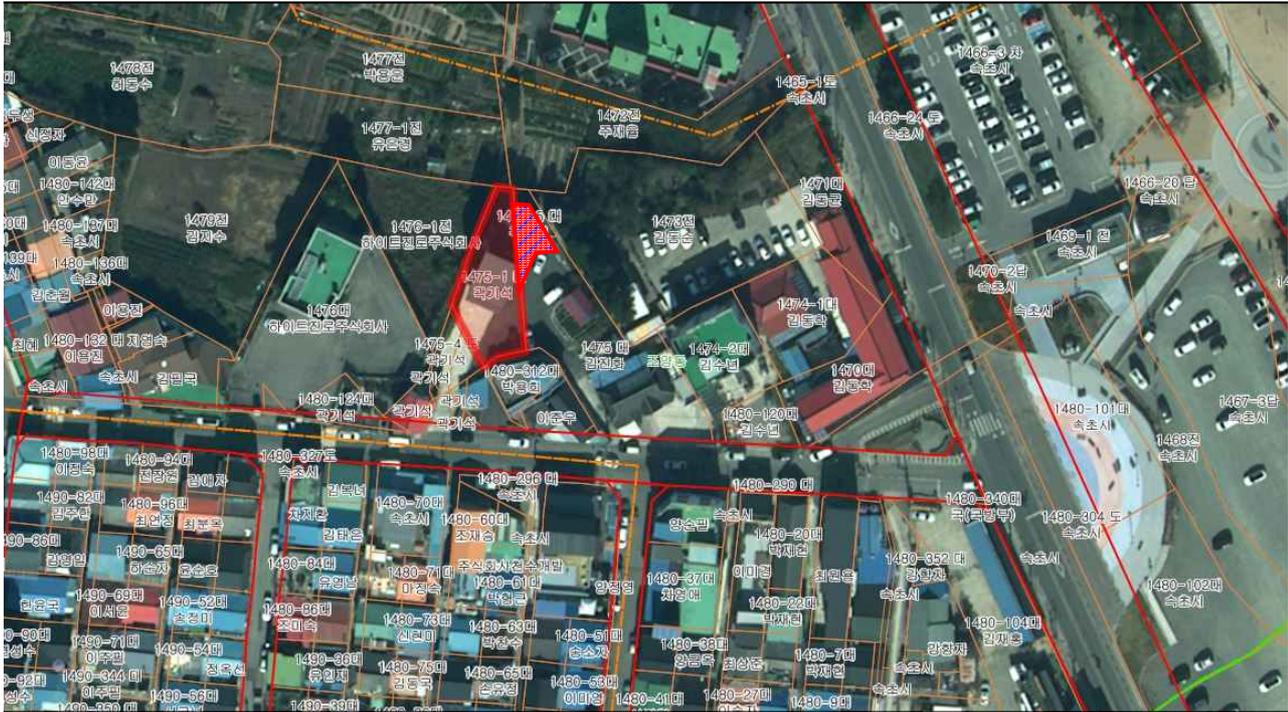
- 가. 공 고 명: 건축허가(신고) 시 기 지정한 도로 폐지 공고
- 나. 도로위치: 속초시 조양동 1475-1번지 외 2필지
- 다. 공고방법: 속초시공보, 각 자치단체 게시판 및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 라. 공고기간: 2023. 12. 22. ~ 2024. 1. 5. (14일간)
- 마. 도로 지정 폐지 조서

소재지	지번 (건축허가 당시 지번)	지 목	면적(㎡)			소유자	도로지정 당시 건축위치 건축물 용도 건축허가번호 (허가 통보일)	비고
			공부 면적	당초 지정 면적	금회 폐지 면적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1475-4 (1475-1)	전	486	65	65	곽기○	조양동 1475-1번지 외 2필지 단독주택 2018-건축디자인과-신축허가-9 (2018. 1. 17.)	건축주: 곽기○
	1480-373 (1480-351)	대	33	29	29			
	1480-372 (1480-123)	대	54	6	6			

- 바. 공고방법: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판
- 사. 관계도서: 속초시청 건축과 비치(열람가능)
- 아. 문의사항: 건축과 건축허가팀(033-639-2457)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NONE



도로 폐지 현황도

축척 NONE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속초시 건축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알리어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0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건축법」 및 같은법 시행령 일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1항 개정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완화 (안 제43조제1항)

1) 종전에는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에는 정북 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을, 높이 9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우도록 하던 것을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1.5미터 이상,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우도록 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건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대 여부와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1) 주 소 : 우)24826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건축과
- 2) 연락처 : 전화 033-639-2769, 팩스 033-639-2314
- 3) 전자우편(이메일) ironhee@korea.kr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전자문서,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건축과(전화 : 033-639-2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조례 제 호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속초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9미터”를 각각 “10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